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16일

신당제5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허 *탁	허 *탁 1969-07-06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16